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4호 2018. 1. 19(금)

선 람	기관의 장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8- 6호 남원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계획 고시 ----- 1
- 남원시 고시 제2018- 9호 사도개설 허가내용 고시 ----- 3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8- 50호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4
- 남원시 공고 제2018- 65호 공인 등록 공고 ----- 18
- 남원시 공고 제2018- 7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 19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 2018 - 6호

남원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계획 고시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1. 18.

남 원 시 장

- 1. 사업의 명칭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 2. 사업의 목적

“남원 이너뷰티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특화된 이너뷰티 식품산업 브랜드 창출과 새로운 고부가가치 육성으로 농촌지역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 활력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3. 계획의 개요

- 가. 사업위치 :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이너뷰티 식품가공시설GMP) 및 동부권 일원
- 나. 사 업 비 : 8,000백만원(국 5,600, 시 2,400)
- 다. 사업기간 : 2016년~2018년(3년간)
- 라.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 마. 주요 사업내용

- 이너뷰티 식품가공시설(GMP) 사업/ 이너뷰티 창업지원사업/
이너뷰티 신(新)소농 삶터조성/ 이너뷰티 식품산업 박람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가능
(남원시 농정과 농촌개발계 ☎063-620-6394)

■ 시행계획 수립 세부사업 내용

1. 세부사업 총괄표

- 총 사업비 : 8,000백만원(국5,600, 시2,400, 자부담240)
- 이너뷰티식품 가공시설 조성 : 3,900백만원(국2,730, 시1,170)
- 이너뷰티식품 창업지원 : 2,759백만원(국1,931.3, 시827.7, 자부담 240)
- 이너뷰티 신(新)소농 삶터조성 : 300백만원(국210, 시90)
- 이너뷰티 식품산업 박람회 : 165백만원(국115.5, 시49.5)
- 부대비용 : 876백만원(국비613.2, 시262.8)

2. 남원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총괄표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이너뷰티식품 가공시설 조성	H/W	이너뷰티식품 가공시설 조성	3,900.0	2,730.0	1,170.0	-	'17
	소 계		3,900.0	2,730.0	1,170.0	-	-
이너뷰티식품 창업지원	H/W	이너뷰티식품 창업지원	900.0	630.0	270.0	180.0	'17~'18
	H/W	이너뷰티식품 현대화사업	300.0	210.0	90.0	60.0	'18
	S/W	창업지원 교육 및 컨설팅	160.0	112.0	48.0	-	'17~'18
	S/W	이너뷰티식품 제품개발	550.0	385.0	165.0	-	'18
	S/W	브랜드화 지원	150.0	105.0	45.0	-	'17~'18
	S/W	홍보마케팅	495.0	346.5	148.5	-	'18
	S/W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204.0	142.8	61.2	-	'17~'18
	소 계		2,759.0	1,931.3	827.7	240.0	-
이너뷰티 신(新)소농 삶터조성 사업	H/W	삶터 기반조성 지원	200.0	140.0	60.0	-	'18
	H/W	전기 및 상하수도 정비 지원	100.0	70.0	30.0	-	'17~'18
	소 계		300.0	210.0	90.0	-	-
이너뷰티 식품산업 박람회	S/W	국내 식품산업 박람회 참가지원	105.0	73.5	31.5	-	'18
	S/W	국외 식품산업 박람회 참가지원	60.0	42.0	18.0	-	'18
	소 계		165.0	115.5	49.5	-	-
부대비용			876.0	613.2	262.8	-	'16~'18
총 합계			8,000.0	5,600.0	2,400.0	240.0	-

남원시청 고시 제2018 - 9호

사도개설 허가내용 고시

「사도법」 제4조에 의하여 사도개설 허가가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위치 :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산45-7번지 외 1필지
2. 사업목적 :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진·출입로를 위한 사도 개설
3. 공사개요 : 연장 L=568.0m, 폭 B=4.0m (Con`c 포장)
4. 공사시행기간 : 2018. 01. ~ 2018. 06.
5. 공사실시방법 : 토목공사 일반시방서에 의거 실시
6. 허가기관 : 남원시청
7. 허가년월일 : 2018. 01. 16.
8. 피허가자의 주소·성명 : 박옥심(전주시 덕진구 어은골3길 15)
9. 기타사항 : 사도설치 허가사항 조건에 준함

2018년 01월 1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고 제2018 - 50호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10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심지 내 주차난을 해소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화물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시설의 명칭 및 위치 규정
- 화물공영차고지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시장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요금을 징수거나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안 제3조, 14조)

○ 공영차고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운영의 위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협회 또는 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8조)
- 선정방법 :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참가자를 지명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 교통과장)

- 우편번호 : 55738
- 주 소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교통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8),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교통과(☎063-620-65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교 통 과 장

1. 제정이유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심지 내 주차난을 해소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화물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공영차고지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안 제7조)
- 다. 공영차고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예정)
 - 기 간 : 2017. . ~ 2017. . (20일간)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남원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75번지 일원에 둔다.

제2장 공영차고지 시설물의 이용

제3조(이용신청)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이용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이용자가 년 또는 월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이용료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할계산하여 이용료의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3.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전액
2. 화물운송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전액
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제6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소방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3장 공영차고지 위탁운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8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4.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

5.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주 사무소를 남원시에 둔 법인

제9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자격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시장이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신청 및 구비서류) 제8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1부
2. 법인(단체) 등기부 등본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 1부
4. 법인(단체)정관 1부
5.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공영차고지 운영계획서 1부
7. 해당 연도 법인(단체)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②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심사기준) 수탁대상은 심사할 때에는 법인 설립목적 적합성, 운송서비스를 위한 방안,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능력, 공영차고지 관련 사업실적 등

이 포함된 심사평가표 및 방법을 미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 능력,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고,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위탁기간은 위·수탁 관리협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운영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갱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관리에 있어 관계법령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위탁재산의 관리현황 자료를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협조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4조, 제5조에 따라 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수탁권한의 양도나 전대하는 행위
3. 시장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의 설치 및 구조변경 행위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수탁 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를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 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차고지 이용 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구분	2시간 미만	1일 요금	정기권	
			월	년
승용차 및 5톤 이하 화물자동차	무료	1,000원	20,000원	220,000원
5톤 초과 화물자동차	무료	2,000원	30,000원	330,000원

비고

1. 차량구분은 차량등록증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2. 「남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이용 요금을 감면한다.
3. 입차 후 2시간 내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고, 2시간부터 24시간 이내는 1일 요금을 적용한다.
4. 1일 주차는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4시간 초과 시마다 1일 요금을 추가 납부한다.
5. 1일 운영 시간에 징수하는 1회 주차 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6. 정기권 이용자에 대하여 화물차량 1대당 등록 승용차 1대의 요금을 면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남원시 제 호

차고지 이용증명서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 차량번호 :
- 이용면적 :
- 이용기간 :
- 차 고 지 : 남원시 화물공영차고지

상기 차량에 대해 차고지 이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 화물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 000

남원시공고 제2018-65호

공인 등록 공고

남원시 공인 조례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규정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9조(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남 원 시 장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관광시설사업소]

- 1. 공인 등록사유 :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시설사업소→관광시설사업소)으로 관련 시스템(온나라) 전자이미지 재등록
(· 입장료 수입관리를 위한 카드가맹점 전자우편물 발송업무)
- 2. 공인 등록 일 : 2018. 1. 12.
-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7조의2
- 4.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 (cm)	형태	인영	관리부서
등록	남 원 시 관 광 시 설 사 업 소 장 인	2.1cm×2.1cm 정방형	전 자 이 미 지		관광시설 사업소

남원시 공고 제2018- 7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8년 01월 19일

남 원 시 장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범위 등

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관리자	지정 사유	비고
		유형	등급	연장(m)	높이(m)			
금지서매지구	전북 남원시 금지면 서매리 481번지 일원	붕괴위험	D	270	9	남원시장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단,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관리기관(안전재난과)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 붕괴위험지역 중장기 계획에 반영 보수·보강 추진
- 4. 의견수렴기간 : 2018. 01. 19(금.) ~ 02. 07(수) 20일간
- 5. 공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 6.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 7.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청 안전재난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편 : (우)590-701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남원시청 안전재난과)
 - 전화 : 063) 620-6963 · 팩스 : 063) 620-6747

- 붙임 1.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2. 편입토지조서 1부.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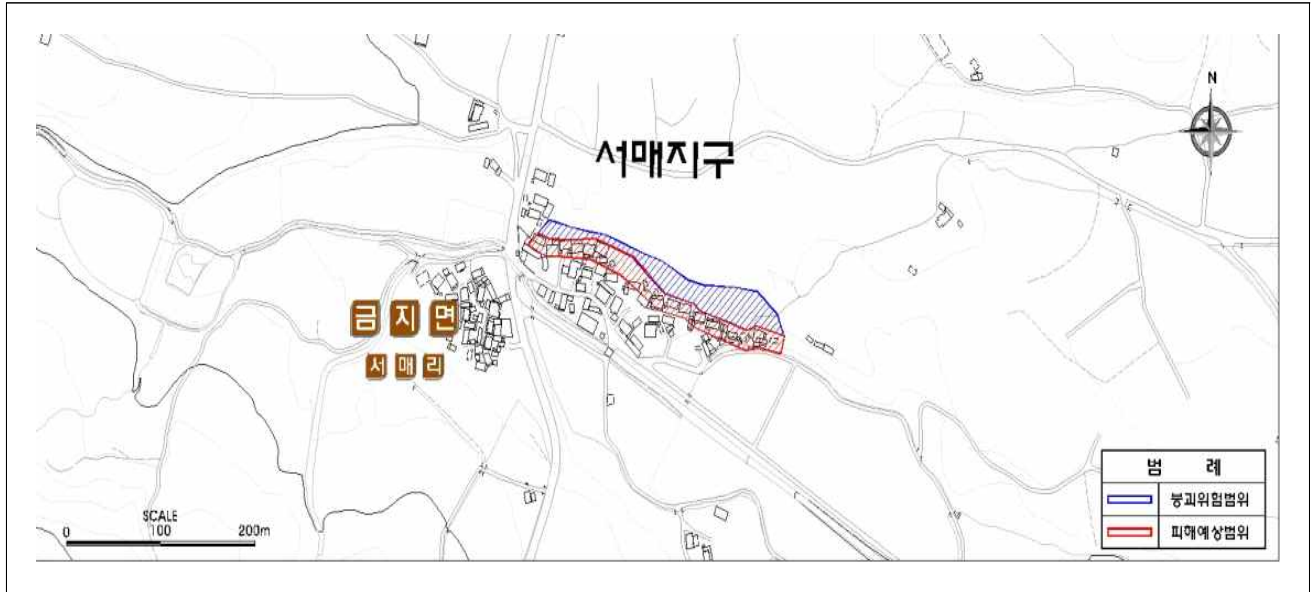
편입토지조서

일련 번호	위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소유자	비 고
		면적(m ²)		유형	등급			
		지적 면적	지정 면적					
계	16필지	10,008	7,350					
1	금지면 서매리 459	241	45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신동*	
2	금지면 서매리 483	377	377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김선*	
3	금지면 서매리 484	228	228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공경*	
4	금지면 서매리 485	370	370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공성*	
5	금지면 서매리 486	383	383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최옥*	
6	금지면 서매리 487	585	585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박명*	
7	금지면 서매리 488	939	939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나강*	
8	금지면 서매리 502	393	393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지강*	
9	금지면 서매리 503	640	640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장덕*	
10	금지면 서매리 504	774	774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공삼*	
11	금지면 서매리 505	536	536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나길*	
12	금지면 서매리 506	691	691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이명*	
13	금지면 서매리 522	198	198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하은*	
14	금지면 서매리 520	860	860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이정*	
15	금지면 서매리 547	281	281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김병*	
16	금지면 서매리 1222-0000	2,512	51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국(건설부)	

※ 추후 필지 및 지정면적 변경될 수 있음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 현황사진

